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12.(수) 11:00 < 6.13.(목) 조간 > 배포 2024. 6. 12.(수)

연구장비 도입,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금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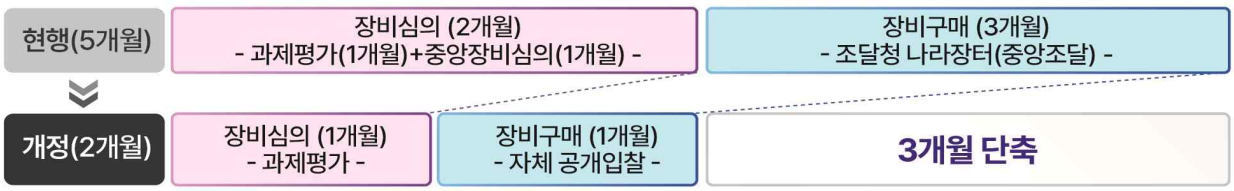
※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

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월 20일(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장비도입 절차 간소화 내용 >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10
		담당자	사무관	노승구	044-203-45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주요 개정 내용

중소형 장비(1억원미만) 심의주체 변경

관련조문 :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제7조(전문기관), 제14조(심의 대상)

기존 '중앙장비심의위원회(장비전담기관)' → 개선 '연구개발과제평가단(R&D전문기관)'

구분	현행	개정
절차	과제평가(1개월) → 중앙장비심의위원회(1개월)	과제평가(1개월) (장비도입심의 병행)
심의기간	2개월 이상	1개월

구매방식 개선

관련조문 : 제20조(구매원칙)

기존 조달청 나라장터 → 개선 연구기관 자체 공개입찰

구분	현행	개정
절차	조달청 나라장터 나라장터 구매의뢰 요청(1개월) → 조달청 공고·개찰(1개월) → 평가·계약체결(1개월)	자체 공개입찰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입찰 → 평가 → 선정·계약체결 등
구매기간	3개월 이상	1개월

참고2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설명회 개요**

□ 추진배경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연구소·대학 등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 추진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3호, 2024.6.13. 일부개정]

□ 개요

○ 일시 : '24.6.20(목) 15:00 ~ 15:5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추진방식 : 온라인 설명회(KIAT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링크	QR 코드
https://www.youtube.com/live/Es1mXjJhzol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5	05′	요령 개정 설명회 안내	
15:05~15:30	25′	▸ 요령 개정 내용 설명 - 중소형 장비 도입 심의주체 변경 - 장비 구매방식 개선 - 장비 관리대상·활용 범위 등 변경 - 성과활용기간 내 장비처분 심의기관 일원화 등	
15:30~15:50	20′	Q&A	